

「평창군 경로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

심사 보고서

1. 심사경과

- 제안일자 및 제안자: 2023년 5월 12일, 이은미 의원 발의
- 회부일자: 2023년 5월 17일 회부
- 상정일자: 제285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
(2023년 5월 17일 상정·의결)

2. 제안설명의 요지 (제안설명자: 이은미 의원)

가. 제안이유

조례안에 ‘미등록 경로당’ 정의를 규정하며, 자치사무인 미등록 경로당 보조금 지원에 있어 「지방재정법」 제17조제1항제4호에 따라 조례를 통해 지원 근거를 규정하고자 함.

나. 주요내용

- 가. 정의 조항에 미등록 경로당을 규정(안 제2조)
- 나. 지원대상에 미등록 경로당을 추가(안 제3조)
- 다. 미등록 경로당 지원 항목으로서 운영비, 냉·난방비, 양곡구입비를 경로당 보조금액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음을 규정(안 제11조의2)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(전문위원: 김영옥)

○ 본 조례안은

지역의 어르신들이 친목활동 및 여가 등으로 실제 이용하고 있으나, 「노인복지법」에 규정된 노인여가복지시설 요건에 부합하지 못하여 국가에서 지원받지 못하는 별개의 시설(미등록 경로당)에 대해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법규 근거를 신설하려는 것으로,

○ 미등록 경로당을 정의하고, 지원대상에 추가하여

지원이 필요하다 인정되는 경우, 지정된 품목비에 한하여 시설규모, 이용인원, 운영실태 등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차등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함.

○ 노인의 보건 및 복지증진은

「노인복지법」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으로 규정하고 있고, 주민의 공공복리를 위한 지자체의 자치사무라 할 것이므로,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관내 미등록 경로당 지원을 위한 자주적인 정책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데 본 조례안의 취지가 있다고 생각됨.

○ 검토결과,

지자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소관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고,
법률의 의도를 저해하는 바가 없는 때, 그 지역 실정에 맞게
특정사항을 규율할 수 있으므로,
개정에 따른 상위법 저촉사항 등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.

다만, 기존 경로당 이용자들의 상대적인 우려 및 분열,
무분별한 미등록 경로당의 급증 등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하여
사전에 면밀히 미등록 경로당 지정 기준 및 지원 계획을 확립하여
내실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라 사료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
5. 토론요지 : 없음

6. 심사결과 : 원안의결

7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음